

학 칙

2016. 11. 1. 33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교육기본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교육목적과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기독교의 성경적 효에 입각하여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방침,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명칭) 본교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제3조(학위과정) 본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과정정원) 본교의 학위과정별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69명

효학과, 효문화학과,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가족상담학과, 음악과, 효한국어교육학과

2. 박사과정 - 30명

효학과(효학, 효문화, 신학,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가족상담, 음악, 효한국어교육 전공)

3. 석·박사통합과정 : 학생정원은 위 1, 2호의 정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의2(계약학과 설치·운영) 삭제(제14장 신설)

제2장 입학, 편입학

제5조(입학시기) 본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 본교 석·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자

2.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자

3.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다른 계열의 학과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가려 입학할 수 있다.

- 제7조(입학지원) ① 본교에 입학할 지원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정원 외 입학으로 하되 지원절차는 같다.
 ② 입학지원의 절차 제출서류, 입학전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8조(입학전형) ① 석사과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구술시험으로 하며,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구술시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답시험을 볼 수 있다.

<개정 2016.7.1.>

② 박사과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구술시험으로 하며,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구술시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영어)을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어 시험은 외부기관에 위촉하거나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시험(TOEFL, TEPS 등)의 일정 성적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6.7.1.>

③ 입학지원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재·편입학) ① 재입학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적된 자에게 재차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석사·박사과정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매학기초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하며, 학칙 제 26조 제2호, 6호, 7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1. 석사과정 이수 중 제적된 자는 제적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차 입학
2. 재차 입학자의 수학연한은 1차 재적 당시의 잔여 수학연한에 한하여 재적
3. 제적 전에 이미 취득한 학점은 교과변경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

② 전항에 의거 재차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이외에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은 신입학전형에 준하여 전형하며, 모집 시행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7.1.>

④ 편입학은 석사·박사과정의 입학정원의 범위 내로 모집하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1.>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 자격	
		정규등록학기수	이수학점
석사과정	2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3	3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박사과정	2	2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	4학기 이상	24학점 이상

제3장 수업,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 및 수료<개정 2016.7.1.>

제10조(수업) ① 본교의 학년은 3월에서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 방학 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15주)이상으로 한다.

⑤ 수업은 전일제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⑥ 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정기휴업일과 임시휴업일로 나눈다.

1. 정기휴업일: 하계 및 동계 방학,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2. 임시휴업일: 정기휴업일 외 기타사유로 휴업기간 필요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1.>

제11조(수학연한) 본교의 수업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수업연한은 2년(목회학전공(M.Div)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목회학전공(M.Div)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사과정 :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석·박사통합과정 :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입학자격, 이수학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교과과정) ① 석·박사과정의 교과과정에 각각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논문과목을 둔다.<개정 2016.7.1.>

② 각 과정의 학과와 학과내 전공과정의 교과편성, 특수과정의 교과편성과 교과과정의 설정·변경 및 그 원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과과정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과정별 수료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28학점(목회학전공(M.Div) 90학점)이상

2. 박사과정 : 36학점 이상 다만,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소속학과의 지도를 받아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이 때 보충과목에 관한 사항은 박사과정운영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석사과정 전 학과 학생 중 학위논문제출을 교과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학점에 6학점을 더 취득하여야 한다.

③본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본교 타 석사과정을 입학하는 경우에는 이수학점 중 공통필수과목

및 학점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7.1.>

제14조(과목 및 과정 총학점) ①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과목당 학점은 석·박사과정 2, 3학점으로 한다.

② 전조 제1항의 각 과정별 총 이수학점 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1.>

과 정	공통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논문과목		계
				논문지도	논문	
박사과정	9	18	9	P (3학기)	6	42 (선수이수학점 미포함)
석사과정	일반	6	12	10	4 (6)	32 (34*)
	목회학전공 (M.Div)	6	30	54	6 (6)	96 (96*)
	목회음악전공 (M. Div. with C. M.)	6	신학분야 12	신학분야 30	졸업논문 혹은 연주 6 (6)	96 (96*)
음악분야 15	음악분야 27					

* 석사과정 학생 중 논문대체 교과추가 이수자

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이 한 학기에 최대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목회학전공(M. Div.)과 목회음악전공(M. Div. with C. M.) 18학점, 박사과정 9학점이다(단, 박사과정은 선수과목 이수 시 12학점)<개정 2016.7.1.>

②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최대 6학점이다.<개정 2016.7.1.>

제16조(이수교과) ① 각 학위과정에서 매 학기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의 교과목 중 전공 간 관련과목은 교차수강 이수과목으로 할 수 있다.

③ 각 과정별 학생의 이수교과목 선택은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공통과목) ① 공통필수과목은 과목 필수과목과 채플을 두며,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로 본교에서 지정한 공통필수과목인 채플에 매 시간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② 채플과목은 총 학점 산출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수강출석에 반영한다.

제18조(특설과목) ① 특수연구, 각종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규과정 외로 특설과정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등록을 필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과정의 개설, 수강대상, 수강신청, 자격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학기 및 특설과정 시행과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19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간 전과로 인한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차에 변경할 수 있다.

② 전과 및 전공변경에 대한 자격, 허가범위, 전 취득학점의 인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 수료를 위하여는 제13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1의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교환수강 및 학점인정) ① 본교와 협정에 의해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사전에 수강을 승인 받아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본교에 개설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문연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해당학과 학과장의 승인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취득 또는 교환된 학점이 본교의 평가규정과 상이할 경우 그 이수시간과 학점은 제29조의 각 등급 평점과 최근사한 평점으로 인정하되 학점인정은 등급이 B0 이상인 경우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6학점 이내
2. 박사과정 : 9학점 이내

⑤ 군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 취득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 이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본교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외 타전공과목을 연구에 필요한 목적으로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학과장의 승인으로 수강할 있으며,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석·박사과정 : 6학점 이내. <개정 2016.7.1.>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2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학업에 따라 정규등록, 연구등록, 학점등록, 시험등록의 4종류로 구분한다.

③ 석사과정은 4회, 박사과정은 6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및 등록금,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23조(휴학) ①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각 과정마다 통산 2년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군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4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복학 시기는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자퇴) 질병 또는 기타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

1. 타 학교에 입학한 자
2. 품행이 불량한 자
3. 휴학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4. 4주 이상 무신고 결석 자
5.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6. 학력이 열등하여(전체학기 평점 3.0 미만) 향상의 가망이 없는 자
7. 징계위원회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5장 수강신청 및 시험과 성적

제27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지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또한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수강신청 및 변경과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28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시험, 연구과제, 연구발표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7.1.>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일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7.1.>

제29조(성적평가)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시험, 출석상황, 과제 등을 총괄하여 평가하되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적의 등급평점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97-100	4.3	C+	77-79	2.3
Ao	94-96	4.0	Co	74-76	2.0
A-	90-93	3.7	C-	70-73	1.7
B+	87-89	3.3	F	0-69	0
Bo	84-86	3.0	INC	재수강	
B-	80-83	2.7	P		합격

2. 보류 <INC>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이수를 소정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경우 INC (Incomplete)를 줄 수 있다.

3. 합격 <P>

실습 실기 등의 성적으로 학점은 인정하나 성적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합격할 때 P<Pass>를 준다.

4. 불합격 <NP>

실습 실기 등의 과목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N.P<Non Pass>로 처리하고 졸업 때까지는 합격하여야 한다.

제30조(성적인정) 학점은 등급C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수료성적은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학점인정 출석) ① 교과별로 한 학기 중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80%미만 일 때에는 자동적으로 F학점이 된다.

② 출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결석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2조(학위청구논문제출) ①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제13조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전체 학기 평점 평균이 석사3.0, 박사 3.2 이상인 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및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③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절차, 방법, 합격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제33조(논문심사) ①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주·부심)은 학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논문지도교수 포함)에 의거 총장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석사과정 :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하고 2인은 심사위원(부심)으로 한다. 필요시 동일 전공분야의 외부 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 심사위원은 본교 교원 4인 이내, 외부 연관 전공분야 1인 이상으로 최소 5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한다. 음악전공은 논문심사위원 3인 이상, 실기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두 분야를 나누어 개별 심사한다.<개정 2016.7.1.>

② 논문심사는 석사는 3회, 박사는 5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7.1.>

③ 각 과정별 학위청구논문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사과정 : 본심사와 구술시험 시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상의 승인에 의한다.
2. 박사과정 : 본심사와 구술시험 시 심사위원 5인 중 4인이상의 승인에 의한다.

④ 학위논문의 제출자격, 절차, 심사, 합격통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위수여) ① 각종 학위수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 기능 등은 대학원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기 1년의 위원은 각 학과장을 포함 7인 이내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석·박사학위 수여는 제13조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전공, 외국어 및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구술시험 포함)에 합격한 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전공분야에 따라 제3항에 규정한 종별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석, 박사학위<개정 2016.7.1.>

과정	학 과	전 공	수 여 학 위
석사	효학과	효학, 효인성교육, 효리더십, 효인성코칭	효학(M.A.), 효교육학(M.Ed.)
	효문화학과	효문화, 다문화, 부모교육	효문화학(M.A.), 교육학(M.Ed.) 다문화학(M.A.)
	신학과	효신학, 성서신학, 기독교상담, 목회음악	효신학(M.A.), 신학(Th.M.), 목회학(M.Div.), 목회음악학(M. Div. with C. M.)
	사회복지학과	효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학(M.S.W.)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지도, 청소년인성교육, 청소년코칭	교육학(M.Ed.)
	가족상담학과	가족상담, 학교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상담학(M.A.), 교육학(M.Ed.)
	음악과	기악, 성악, 지휘	음악학(M.M.)
	효한국어교육학과	효한국어교육	효한국어교육학(M.Ed.)
박사	효학과	효학, 효문화, 신학,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가족상담, 음악, 효한국어교육	효학(Ph.D.)

2. 명예박사학위

명예효학박사(H.D.)
명예신학박사(D.D.)
명예문학박사(Litt.D.)
명예교육학박사(Ped.D.)

④ 학위수여결정, 수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수여규정 및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5조(명예박사학위 수여) 본교의 교육이념 달성을 위한 효학정립 및 효사상의 확립과 확산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성경적 효사상 연구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내 학술의 진흥과 인류문화향상에 공헌한 인사에게 제34조에서 정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학위기)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기는 별지2와 같으며 명예박사학위기는 별지3과 같다.

제37조(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수여학위 취소) 각 학위(명예박사학위 포함)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학위취득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자격시험

제39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이라 함은 석·박사과정에서 학위취득에 있어 전제요건으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및 전공에 대한 종합시험을 말한다.

제40조(외국어 시험) 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은 전공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은 외부기관에 위촉하거나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시험(TOEFL, TEPS)의 일정 성적으로 같음 할 수 있다.

제41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에 해당 전공분야 교과에 대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교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5과목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교과목은 매 학기 초에 학과별로 정하여 대학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42조(합격기준) ① 각 자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합격점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60점 이상

2. 종합시험 : 석사과정 60점 이상, 박사과정 70점 이상

②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시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8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학점은행제 및 외국인 학생 <개정 2016.7.1.>

제43조(공개강좌) ①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무, 교양, 연구 등 학식과 실천을 지도하기 위한 공개강좌를 둔다.

②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가 공시 한 강좌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의 1(연구과정) ① 본교에 심오한 학식 및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할 목적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수업년간 1년 이내 과정의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4년제 대학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연구과정생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학기당 9학점까지 수강 할 수 있다.

③ 전항에서 이수한 학점은 정규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학기만 이수한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학점은행제)본교 평생교육원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내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6.7.1.>

제45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본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원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입학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학위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정원 외로 입학할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대학의 수업연한 등에 따라 본교에 입학할 자격이 인정된 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입학할 허가한다.

③ 외국에서 출생하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재외교포학생의 입학허가 또한 전항과 같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상·벌

제46조(장학금) ① 본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장학금 지급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6.7.1.>

② 본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각급 기관, 단체 등의 위탁교육생에게는 본교와 위탁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7조(장학위원회) ① 본교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각종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장학위원회 위원 위촉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48조(학생지도) ① 학생은 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각 과정 학생 중에 성적이 불량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 제49조(표창 및 징계) ① 학생이 교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였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학생에 대한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0장 직제, 대학원위원회 및 교수회

- 제50조(교원직제) ① 본교에는 총장, 부총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교목실장, 도서관장의 보직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두되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교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과에는 학과장과 학생의 개별학사지도와 논문의 연구지도를 위한 지도교수를 두되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과장은 해당학과 학사업무와 학생지도 업무 등을 통괄하고, 지도교수는 학과 내 전공별 연구지도 또는 학생지도에 임하며 학과장을 보좌한다.

- 제51조(사무원 직제) 본교의 사무국에 사무국장, 총무과장, 관리과장, 교학과장, 사무직원을 두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1.>

- 제52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 학사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총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대학원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치·폐기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편성에 관한 사항
4. 학사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④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53조(교수회) ① 본교의 발전 및 학생지도 등의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 교수로 구성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발전계획 및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2. 입학수준 및 학생유치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수업과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③ 교수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전 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장 부속기관, 학술연구회

제54조(설치기관) ① 본교에 다음의 부속(설)기관을 두되,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학보사, 대학교회, 효박물관, 효행장려및효복지진흥원, 하모니상담센터, 성산학술연구원
2. 부설기관 :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국제교류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양성교육원, 성폭력상담원양성교육원, 성산효마을학교, 어린이집
3. 특성화사업 및 산학협력단 :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설치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되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설치기관의 장은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를 둘 수 있다.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학술연구회) ① 본교학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으로 조직된 학술연구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회 회원은 재학생으로 한정하며 회원은 매학기 연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술연구회의 조직, 운영, 회비 등에 관하여는 학술연구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칙변경

제56조(시안공고) 학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안을 학교계시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시안심의) 변경 안은 대학원 위원회의에서 심의 후 학교법인 성산학원 정관 제33조의7에 의

거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58조(변경 및 보고) 변경안 중 본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시행공포) 변경된 학칙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하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장 대학자체평가

제60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장 계약학과

제61조(계약학과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은 계약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62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의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은 본교에서 담당한다.

제63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입학지원자는 계약된 산업체에 소속된 자로 석사 및 통합과정은 학사학위, 박사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생선발 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학생의 정원)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본다.

제65조(운영경비 부담 및 학생 납부금)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한다.

제66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4학기 이상으로 운영한다.

② 수업일수는 학기 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리고 그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수업장소는 계약에 의한다.

제67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와 설치 및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와 설치 및 운영기간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 계약학과와 학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의하되,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학과 재학생이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제68조(이수학점 및 학위수여) 계약학과와 총 이수학점은 본교 학칙에 따르며 학위수여 종류는 제34조에 의한다.

제69조(준용규정) 계약학과와 운영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을 준용한다.

제70조(포상) ① 학업성과 연구활동이 우수한 학생,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1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장 보 칙

제7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3조(준용원칙)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법인정관 및 대학원대학교 현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수학연한) 제11조 제1항 석사과정의 수업연한 2년(신학전공 3년), 재학연한 4년(신학전공 5년)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명칭변경) 이 학칙 시행 당시 2002학년도 가정사역학과 및 2003학년도 상담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가족상담학과(가정사역학 전공) 입학으로 본다.

③ (교과추가이수제도)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교과추가이수학점제도는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주임교수 등) 이 학칙 시행당시 제50조에 규정한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이 학칙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규정폐지) 이 학칙 시행과 동시 학칙시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2006학년도 3학점 수강신청 학생들은 이 학칙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학기당이수학점) 제15조에 규정한 석사과정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 규정은 2005학년도 수강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학년도 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학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추가 이수학점(6학점이상)으로 석사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의 제13조 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